

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9-135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3. 3. 8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벤처투자법 제정(2020) 등 정부의 중소벤처 투자활성화 정책과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구성에 따른 조례 개정(근거 마련 등) 필요
-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구성을 위해 안산시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기금의 출자·출연대상 및 용도 등의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기금의 출자·출연을 위하여 “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·출연에 사용할 수 있다.” 를 신설하여 규정함. (안 제5조의2)
- 기금의 지출 용도에 “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” 을 신설하여 규정함. (안 제10조제6호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2. 12. 30. ~ 2023. 1. 19.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 17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,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 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출자·출연 대상) 기금은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·출연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| | 기업지원과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| 실·과장 직위·성명 |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|
| | 담당·팀장 직위·성명 | 기업지원팀장 정승옥 |
| 자 | 담당자 성명·전화 | 박옥숙 (행정 2841) |

< 붙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조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10조(기금의 지출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6. (생 략)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,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5조의2(출자·출연 대상) 기금은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·출연에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기금의 지출)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|